

탁트인 영등포를 만드는 62개의 약속

공약실천계획 총론

제도적 기반
이행관리계획

1

매니페스토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규정

(제정) 2013.01.24. 훈령 제111호
(일부개정) 2017.07.13. 훈령 제131호
(일부개정) 2019.01.17. 훈령 제139호
(일부개정) 2020.02.20. 훈령 제143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 계획 수립과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 공약사항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방침) ① 선거공약은 구민과의 엄숙한 계약이라는 인식하에 구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한다.

②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(참공약) 실천 운동에 적극 협조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영등포구민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공약실천 현황을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, 구청장은 구민들의 검증·평가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선거공약이 구민과의 공적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약실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
제4조(관리체계) ①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기획재정국장이 하고 기획 예산과장이 보좌한다. <개정 2017.07.13., 2019.1.17., 2020.2.20.>

② 계획의 수립과 실천은 단위사업별 소관 담당관·과장·동장이 수행하고, 단위사업별 주관 담당 및 협조담당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한다.

제5조(공약사업 확정) 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 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 1차안을 작성한다.

② 공약사업 1차안이 작성되면 각 사업별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2차안을 작성한다.

1. 사업의 적정성
2. 임기 내 실천가능성 및 임기 내 실천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
3.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
4. 법률적 검토(자치법규 제·개정 포함)

③ 기획예산과장은 사업별 주관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07.13. 2019.1.17., 2020.2.20.>

④ 구청장은 제3항의 공약사업을 최종 검토한 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확정·발표한다.

- 제6조(실천계획 수립과 변경)** ① 사업별 주관부서(이하 “주관부서”라 한다)의 장은 제5조 제4항에 따라 확정·발표된 공약사업별 실천계획(이하 “실천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07.13. 2019.1.17., 2020.2.20.>
-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실천계획을 종합·조정하고 확정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한다.<개정 2017.07.13. 2019.1.17., 2020.2.20.>
- ③ 예산이 필요한 공약사업은 투자 계획과 재원조달 계획을 실천계획 속에 포함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07.13., 2020.2.20.>
- ④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7조(공약사항의 실천) 수립된 실천계획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실천한다.

- 제8조(추진상황 관리)** ① 주관부서는 공약사업별 추진실적을 매 분기별로 진행 중인 사업과 완료된 사업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거, 기록 관리하고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한다.<개정 2017.07.13. 2019.1.17., 2020.2.20.>
- ② 기획예산과장은 주관부서로부터 제출받은 모든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한다.<개정 2017.07.13. 2019.1.17., 2020.2.20.>

제9조(추진상황 점검) 공약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획예산과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 평가결과 부진 또는 문제 사업,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대책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17.07.13. 2019.1.17., 2020.2.20.>

- 제10조(공약이행평가단 구성)** ①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영등포구민을 대상으로 공약 평가단을 모집·선발하여 공약 이행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.
- ②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구정활동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주민공개) 구청장 공약사항의 확정, 실천계획, 수정 및 변경, 추진상황,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 선거공약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부칙(2013.01.24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직 개편에 따른 일괄개정훈령, 제131호, 2017.07.13.)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직 개편에 따른 일괄개정훈령, 제139호, 2019.01.17.)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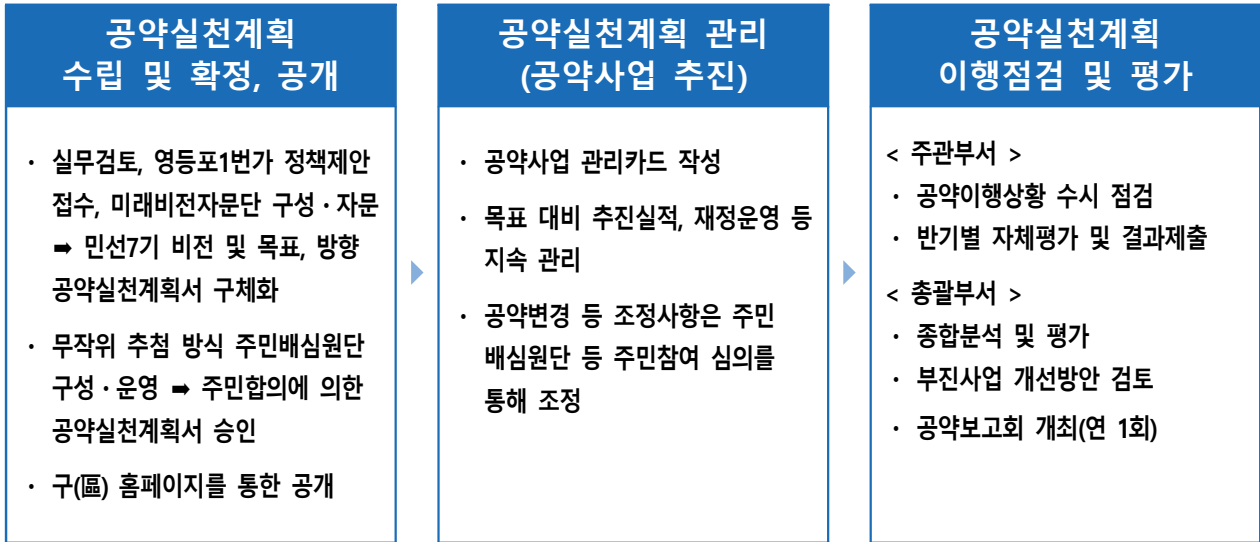
부칙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직 개편에 따른 일괄개정훈령, 제143호, 2020.02.20.)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

공약사업 이행점검 및 보완 평가 계획

<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관리 체계도 >



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규정

관리주체

- (총괄부서) 기획예산과
 - 실천계획서 의거 공약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 및 조정
 - 공약사업 추진사항 분석·평가 및 보고 총괄
- (주관부서) 공약사업 추진부서(25개)
 - 실천계획서 수립 및 공약사업 추진(담당 지정)
 - 실천계획서 의거 반기별 자체평가 및 수시 점검 등 추진 관리

공약실천계획 관리(공약사업 추진)

- 사업별 담당 지정 및 관리카드 작성(주관부서)
 - 추진실적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보완
 - 반기별 자체평가 실시 및 관리카드에 평가결과 반영, 총괄부서로 제출

○ **공약실천계획 조정·변경**

- 원칙적으로 임의조정(폐기·변경 등) 불가
- 공약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 가능
 - 공약조정으로 당초 공약의 취지와 구정목표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경우
 - 법령개정이나 국가정책의 변화 등 외적환경 변화
 - 주민과의 합의에 의한 사업변경 등의 경우
- **조정 절차**



(주민배심원단)

- 영등포구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 중 성·연령·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선발 및 구성
- 역 할: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심의, 공약 조정 적정여부 평가 및 의견제시 등

(주관부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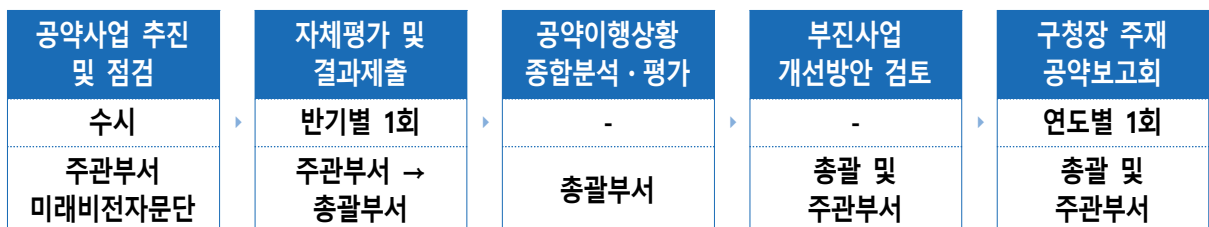
- 사유발생 시 조정 및 변경 계획안 수립
- 총괄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 ➔ 온·오프라인을 통한 미래비전자문단 분과 및 구민 의견수렴
-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변경계획 수립 및 총괄부서에 제출

(총괄부서)

- 공약사업 수정·변경안에 대해 공약취지 부합성, 공약달성도, 사업효과성, 문제점 및 대책 등의 적정여부 검토 ➔ 주민배심원단 심의를 거쳐 확정
- 확정된 변경안은 구(區) 홈페이지 게시 및 구민 공유

□ **공약실천계획 이행점검 및 평가**

- **평가대상: 공약사업별 이행실적**
- **시 기: 자체평가(반기별 1회), 공약보고회(연도별 1회)**
- **추진 절차**



(미래비전자문단 - 분과활동 중심)

- 분과별 소관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실적, 문제점 등 이행상황 점검
-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여 개선방안 마련 및 정책자문

영등포 100년 미래비전자문단

- 공약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에 있어 분야별 민-관-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통·협치체계 구축

- 구 성(2018. 7. 출범)

분과	6개	미래인재 문화육성	쾌적한 안심생활	4차산업 경제일자리조성	탁트인 도시	더불어 복지	소통공감 행정
인원	60명	14	10	9	9	10	8

- 역할

- 영등포1번가 및 영등포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지역현안 및 구민의견에 대한 검토·숙의
- 공약실천계획서, 4개년 계획 및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·평가 참여
- 기타 정책자문 및 제안 등

(주관부서)

-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진도 수시 점검, 반기별 자체평가 실시
-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한 공약관리카드 수정 및 총괄부서에 제출

(총괄부서)

- 반기·연도별 공약 추진상황을 종합 분석 및 평가
- 부진 또는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, 보완, 개선요구 등 필요조치 추진
- 공약사업 이행상황 공유 및 부진사업 개선사항 검토를 위해 공약보고회 개최(연1회)
-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외부기관 공약평가 대응

(공약보고회)

- 참석대상
 - ▶ (구민) 미래비전자문단 대표 위원
 - ▶ (행정) 구청장, 부구청장, 공약사업 해당 국·소장, 과장
- 주요내용
 - ▶ 공약사업 추진실적,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보고
 - ▶ 보완·개선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조치 요구 등
- 추진상황 및 평가결과는 구(區) 홈페이지 게시로 구민 공유(연1회)

□ 공약실천계획 이행완료

○ 기본원칙

- 공약완료는 이행실적과 함께 성과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
- 자체평가 결과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와 협의 후 최종 결정

○ 완료기준

- (완료)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(최종목표 달성)
- (이행후 계속추진)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 또는 주기적 반복 사업

공약 이행실적 점검 기준

- (완료) 기구 신설, 제도 도입 등이 내용으로 이행이 완료된 사업
- (이행 후 계속추진) 완료 후 추가목표 추진 또는 주기적 반복 사업
- (정상추진) 사업이 정상추진 중이고,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완료가 예상되는 사업
- (일부추진) 추진하고 있으나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

※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완료 세부 기준

- 입법 관련 공약: 법, 조례 통과 / 재정 관련 공약: 재정 확보
- 조성사업(산업단지 등): 입법 및 재정보호 후 사업개시
- 건설사업(SOC 도로건설 등): 입법 및 재정보호 후 사업 개시
- 시설유치 사업: 입법 및 행정결정 등 완료 시
- 자본유치 사업: 양해각서에 그치지 않고 자본유입이 시작되었을 경우
- 건립 공약 사업: 완공되었을 경우(착공은 정상추진으로 분류)
- 재건축, 재개발 사업: 이주가 시작되었을 경우(착공은 정상추진으로 분류)